-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대토보상 시행계획 안내문

□ 광명시 공고 제2019-719호(2019.05.07.)로 공람공고 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1호(2020.05.27.)로 지구지정 고시된『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동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안내하오니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대토보상 시행계획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번길 22, 라까사타워 6층,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

○ (전화) 031-2617-7804 (팩스) 02-2617-7812

2022. 7.

경기주택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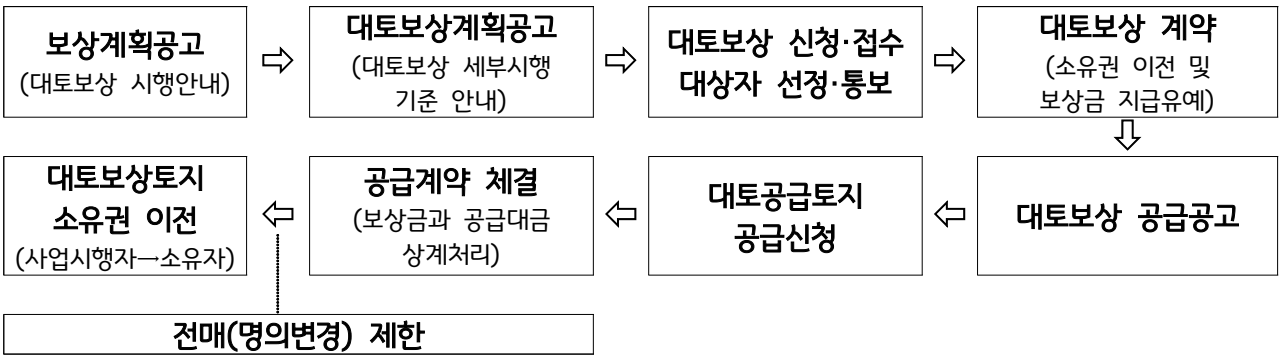
광명시흥보상사업소

1 대토보상 개요

□ 대토보상 개념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3조)

□ 대토보상 절차



2 대토보상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대토보상 추진일정

- 대토보상 신청기간 : 2021년 8월 5일(금)까지
  ※ 평일 10시~17시 신청가능 (단, 12시~13시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2년 8월 12(금)까지 대상자 개별통보
- 대토보상 계약체결 : 2022년 8월 26일(금)까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방법 : 소유자 본인이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장소(GH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 방문하여 대토보상 신청서(공사 소정 양식) 작성
  ※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 중 1필지를 지정하여 신청(1인 1필지 신청)
  ※ 토지 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부재부동산 소유자 양도소득세 상당액 제외)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번길 22, 라까사타워 6층, GH 광명시흥보상사업소
-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토지보상 내역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소유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 법인 또는 종중 등의 경우 신청서류 별도 문의 요망(02-2617-7804)

3 대토보상 신청대상자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광명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우리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토지가 수개 필지인 경우 소유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단일필지 공유 지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미만인 경우 그 미만 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분면적 합계가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인 경우 해당 소유자 공동명의로 대토 신청 가능. 다만,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시 공동신청자 중 후순위자의 순위를 따름
- 대토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추후 공장이전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함

□ 대상자 선정기준

○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토지별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19.05.07.)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하신 분
  -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19.05.07.)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신 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 등을 받았음을 입증 또는 해당 영업의 납세증명서 내지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19.05.07.)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단, 1억원 한도의 현금보상분만 대토보상 가능)
  ※ 부재지주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제7항, 제8항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1억원 한도) 대토보상 신청 가능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보상금 총액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하 “대토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대토비율을 100%로 보며, 대토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접수 마감 후 추첨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첨일시 등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4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

□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용 도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추정)					대토공급 예정시기
	위치	예정면적 (㎡)	예정단가 (원/㎡)	예정금액 (원)	1인당 신청가능면적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생4-1	1,327	5,540,000	7,351,580,000	33㎡ 이상 1,100㎡ 이하	2026년 이후 공급예정
	근생4-2	1,292	5,540,000	7,157,680,000		
도시지원 시설용지	지원4-1	1,657	4,350,000	7,207,950,000	제한없음	
	지원4-2	1,242	4,350,000	5,402,700,000		
	지원6-1	2,298	4,350,000	9,996,300,000		
	지원6-2	2,289	4,430,000	10,140,270,000		
	지원6-3	4,683	4,310,000	20,183,730,000		
주차장	주차장2	1,373	3,410,000	4,681,930,000		

○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면적, 금액, 공급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대상토지의 예정금액은 추정치로 토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등 조건하에 실시한 조건부 감정평가 추정금액입니다.

○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공급시점에 공급가격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별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예정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대토보상 계약체결 등

□ 대토보상 계약체결

○ 대토보상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토지 손실보상 협의기간 종료일인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외 권리 말소 등 소유권 이전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금액 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토보상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는 취소됨

○ 대토보상계약 체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토보상 대상자의 보상명세(현금보상 전환 경우 포함)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

□ 보상금 처리방법

○ 지급유예한 대토보상금액은 대토공급계약 체결 시 대토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합니다.
- 대토보상계약과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 체결 진행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수용재결의 경우 수용개시일, 이하 “이자기산일”이라 함)부터 대토로 받는 조성토지의 공급 계약체결일까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른 이자율)를 적용한 이자(복리)를 후불로 일괄 지급합니다.(단,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다만, 대토보상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이자(단리)를 매년 1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공급방법

○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는 용도별 또는 필지별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2026년 이후 예정)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 예정이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신청 불가합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대토보상 공급대상토지의 공급가격은 공급시점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며 공급시점에 결정된 가격과 예정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공급계약 시 정산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
- 도시지원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은 사업지구 내 유사용도의 토지를 일반공급 후 산정(상한 120%)

- 공급계약 체결 시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대토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되, 일반매각조건의 중도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며 과부족에 대해 정산
- 다수의 대토보상 신청자가 조성토지를 공동으로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의 계약대상자와 공동으로 공급계약체결(지분공유 방식)
- 기타 대토보상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실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안내

7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 의미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및 대토보상계약 체결자가 계약체결 후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 현금보상 전환 사유

○ 대토보상계약 체결 이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받는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가능하며,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이자기산일부터 현금보상 전환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후불)하되,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이율(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함

현금보상 전환 사유	적용이자율
1. 토지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 여건 등의 사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토보상 할 수 없을 때 3.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⑤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토지소유자들이 조합구성에 실패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이율)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공사 소정 양식)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토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통지서(공사 소정 양식)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보상 전환이 불가함

8 전매제한 및 유의사항

□ 전매제한(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

○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 포함)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자기산일 당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대토보상 유의사항

○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하여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확보수단으로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제4항 및 제51조 8의2)

○ 선신탁(개인소유자→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에 의한 대토보상 신청의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향후 대상자 선정 제외 및 대토보상 계약 무효·해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등은 신청자 및 관련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 의 사 항 】

대토보상권(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 받을 권리 포함)을 신탁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행위 등은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고 대토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제한 금지규정(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을 위반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22호(2020.2.14.]

9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세제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이연

- 대토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토로 보상받는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 단,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신청방법 :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 신청서에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피보상자 의무사항 위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경우
•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세액에 1일 0.025%를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기한에 대하여 부과	• 해당 대토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전매금지 위반 외의 사유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의 경우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 납부

○ 양도소득세 감면

- 대토보상자가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40%(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토보상자의 공동사업 시행시 과세이연혜택 종료】

국세청 질의회신에 의거, 지분소유자들이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그 **약정체결**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약정체결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 부과요건이 성립됨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사업 약정내용에 이익배분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를 출자에 따른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는 것이며, 조합을 구성하든 안하든 **공동사업 약정체결을 대부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간주**

10 기타사항

○ 대토공급계약을 대토보상 계약자 명의로 하는지 대토보상 계약자 명의가 아닌 리츠 등의 명의로 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토보상 계약자 명의로 하는 경우	리츠 등의 명의로 하는 경우
[보상계약자 단독 또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대토공급계약을 하는 경우]	[보상계약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대토리츠 명의로 대토공급계약을 하는 경우]
•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과세이연)이 유지됨 • 대토보상금에 부가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자소득으로 인해 당해 연도의 소득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증액될 수 있음	• 리츠 등에 출자하는 경우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또는 과세이연)이 종료되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필요 • 대토보상권이 리츠 등에 출자되었으므로 대토보상금에 부가되는 이자와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조합 등으로 귀속됨

○ 대토보상 신청 접수 결과 대토예정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향후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별도 안내)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사업시행자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접수번호	

대토보상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대토보상 선정순위	순위		
	※ 기입하신 대토보상 선정순위와 신청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취소 및 대토보상 계약이 불가할수 있으니 선정순위 작성 전 반드시 보상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순위 및 신청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공람공고일(2019.05.07.)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거주·영업·소재한 현지인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토보상 신청내역

※ 대토보상 신청 필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물권의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금액이 확정됨

토지 지번 (광명시 가학동)	필지별 토지보상액	현금보상 신청액	채권보상 신청액	대토보상 신청액	대토신청토지 (위치)
합계					

위 본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보상금 중 일부를 위 신청내역과 같이 토지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현금전환 신청사유	붙임 : 신청사유 입증서류		

※ 현금전환 신청사유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6.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신 경우에는 현금보상전환 신청불가

현금보상전환 신청내역

대토의 용도	대토보상 계약금액[1)]	현금보상전환 신청금액	현금전환 후 대토보상 잔여금액	부동산 투자회사 출자여부
계				
입금계좌	(은행) _____ (예금주 :) 붙임 : 입금계좌 사본 1부			

위 본인은 20 . . .자로 체결된 용지매매계약(대토보상협약)에 의해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주1) 대토보상계약금액은 현금보상전환 신청 시의 잔여 대토보상계약금액을 말한다.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통지서

출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부동산투자회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본점소재지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내역

공익사업지구명						
대토신청토지 (위치)	**지번**	**면적 (㎡)**	**대토보상 계약체결일**	**대토보상 금액**	**현물 출자일**	**현물출자 금액**
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토보상권리를 위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출자자) :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부동산투자회사 등기부등본 1부